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(보건소 보건의료과)

2021. 6. 10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94호
- 나. 제 출 자 : 김영섭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### 2. 제안이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금천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설치 등 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나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(안 제4조)
- 다. 응급처치교육(안 제5조)
- 라. 응급의료 지원(안 제6조)
- 마. 자동심장충격기 관리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47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## 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,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### 1) 설치 등 계획 수립(안 제3조)
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 2)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(안 제4조)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설치 장소와 권장 시설을 규정하여 응급 시 긴급 사용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구체화함.

### 3) 응급처치교육(안 제5조)

### 4) 응급의료 지원(안 제6조)

## 5) 자동심장충격기 관리(안 제7조)

-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응급 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 처치와 심폐 소생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4. 8.] [법률 제17203호, 2020. 4. 7., 타법개정]

**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 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**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9. 6. 9., 2011. 3. 8., 2011. 8. 4., 2012. 2. 1., 2016. 3. 29., 2016. 5. 29., 2018. 12. 11., 2019. 12. 3.>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6. 12. 2.>

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5. 14., 2016. 12. 2.>

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5. 14., 2016. 12. 2.>

[본조신설 2007. 12. 14.]

[제목개정 2012. 5. 14.]